

학생회장·부회장선거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7. 3.
 개 정 1998. 6.
 개 정 1999. 3.
 개 정 2002. 10.
 개 정 2012. 3.
 개 정 2013. 9.
 개 정 2014. 12.
 개 정 2017.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기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대의원회에서 한다.

제3조 (선거권)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학기 초부터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자. 다만, 해당학기 1/2 이상 경과된 후 피선된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2.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선거일 당시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한 자.

제4조 (피선거권)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고 선거규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2. 3학년 여름학기까지 전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서 3학년 여름학기까지 총 100학점을 이수한자로서 매 학년 1학기 및 여름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20학점 및 2학기 및 겨울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개정2017.08.28.)
3. 2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3학년 2학기에 18학점 이상 등록을 필한 자(개정2017.08.28.)
4. 3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개정2017.08.28.)
5.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에 회부중이 아닌 자로서 학장,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2017.08.28.)

제5조 (선거방법) ①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학생회장 후보는 부학생회장 후보 1인을 동반하여 입후보한다.

제6조 (임기) ①학생회 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학생회장 유고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잔임 기간 동안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선출시기) 학생회 정·부회장은 2학기 중에 선출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실시가 불가능 한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한다.

제8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상임대의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찬성을 거쳐 상임대의원(각 학과(부) 회장)으로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2017.08.28.)

③입후보자 해당 학과(부)의 학과(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입후보자 등록) ①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성적 증명서
3. 입후보자 각서
4.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선거권자는 후보자로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무효로 하고, 기명날인한 것만을 추천으로 인정한다.
5.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학장 추천서
6. 2인의 참관인(선거권 자에 한함) 신청서
7. 학견 발표원고(15분 이내 분량)
8.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포함-경찰서 발급)(개정 2014.12.29.)

②위원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에 필요한 소정양식의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 위원회에 구성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선거홍보물은 위원회에서 통합 작성하여 게시한다. 단, 다음 제5항의 개인 홍보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⑤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3점 이내의 프랭카드(90센치×700센치 이내)
2. 1종류의 대자보(전지 2장 이내, 20세트 이내)
3.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교내에서의 대의원에 대한 개별 선거운동(동시에 10인 이상의 대의원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위 1), 2)의 개인 홍보물은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은 특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2017.08.28.)

1. 금품, 음식물, 향연 등의 제공
2. 상대 후보 측 운동원이나 선거권 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의 행위
4.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 다만, 입후보자를 구하는 행위 및 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받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12조 (학견 발표회) ①투표 직전에 학견 발표회를 개최한다.

②당해 후보자가 아니면 학견 발표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③발표순위는 등록마감일에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발표자가 자기 순위의 시간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입후보자 발표내용은 본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출한 학견 발표원고와 동일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학견 발표회에서 후보자가 학칙, 선거규정, 법령 등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발표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발표내용이나 학내문제를 제기하는 발표내용은 즉시 방송시설을 차단하고 발표를 중지시킨다.

⑥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학견 발표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발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발표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장명령을 받는 대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4조 (투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자격: 투표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록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3. 투표용지의 수령: 투표자 자신이 선거참관인의 참관 하에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에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4. 투표요령: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가 기재된 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0표를 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5. 투표참관: 본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신청한 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6. 투표소 질서유지: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의 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장명령을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투표시간은 10:30부터 18:00까지로 한다.(신설 2013.09.01.)

제15조 (출입제한) 선거권자 및 교직원 이외에는 학견 발표 및 투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 (개표) 개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표의 개시: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장은 즉시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에 들어가야 한다.
2. 개표참관: 개표 시 본 규정 제10조에 의해 신청한 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3. 개표소 질서유지: 위원장은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표의 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무효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표를 기입한 것
6. 정해진 기표용구로 ○표를 한 후 다른 사항을 추가 기입한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 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8조 (당선확정) ①위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 투표에 의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의 직전학기성적, 전체평점 및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09.01.)

③위에 의하여 확정된 당선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별칙) 삭제 (2013.09.01)

제20조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2013.09.01.)

1. 입후보자 등록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추천서 등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허위, 위조 등 부당하게 작성하거나 입후보자 이외에 제3자가 대신하여 받거나 작성하는 행위 (신설2017.08.28.)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과열방지를 현저히 저해한 행위 (신설 2017.08.28.)
4. 기타 본 규정위반, 공정한 선거방해, 부정선거운동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5.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 또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행위는 후보자가 한 행위 또는 후보자에 대한 행위로 간주한다.

②정.부 후보자 중 1인이라도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에 회부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화된다.

제21조 (재선거)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사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가 될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제22조 (재선거실시)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 (기타) 이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장(정·부)선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2017.08.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선거규정(제10조제1항8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선거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